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09

발의연월일: 2024. 7. 19.

발 의 자:한정애·김준형·서영교

이수진 • 이학영 • 송옥주

민병덕 • 문진석 • 소병훈

민형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·정년연장·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는 한편, 이와 같은 사항들은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 신설, 제7조제1항, 제30조제4항 및 제33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87호) 및 「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9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)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국가경찰위원회"라 한다) 또는 「해양경찰법」 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해양경찰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.

- 1.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
- 2. 제30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경우
- 3. 제33조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정 이상 경찰공 무원의 파면·해임·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는 경우

제7조제1항 본문 중 "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

관의 제청으로"를 "제청으로"로 한다.

제30조제4항 후단 중 "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 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총경·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"을 "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"으로 한다.

제33조 단서 중 "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"을 "국무총리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회하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30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5조(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강등ㆍ정직 및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

의 파면·해임·강등 또는 정직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파면·해임·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6조의2(국가경찰위원회 또는
	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・의결)
	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
	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요
	하다고 인정하여 「국가경찰과
	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
	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국가
	경찰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
	"국가경찰위원회"라 한다) 또
	는 「해양경찰법」 제5조에 따
	른 해양경찰위원회(이하 이 조
	에서 "해양경찰위원회"라 한
	<u>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칠 필요</u>
	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
	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 또는
	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칠
	<u>수 있다.</u>
	1.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
	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
	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
	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
	2. 제30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
	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

제7조(임용권자)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<u>추천을</u>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. 다만, 총경의 전보, 휴직, 직위해제, 강등,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. ② ~ ⑤ (생 략) 제30조(정년) ① ~ ③ (생 략)

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 장은 전시·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 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

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계
급정년을 연장하는 경우
3. 제33조에 따라 경찰청장 또
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정 이
상 경찰공무원의 파면·해임
·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
하는 경우
제7조(임용권자) ①
제청으로
<u>-1, 0</u>
·
제30조(정년) ① ~ ③ (현행과
같음)
4
<u>경정 이상의 경찰</u>
공무원에 대해서는

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 인을 받아야 하고, 총경ㆍ경정 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 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.

⑤ · ⑥ (생략)

제33조(징계의 절차) 경찰공무원 지 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, 「국 가공무원법」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 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. 다만, 파면·해임·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 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,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 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 고,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

·.
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33조(징계의 절차)
세55소(경계리 결취)
<u>국무총리를</u>

찰청장이 한다.